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733
----------	-------

발의연월일 : 2026. 4. 30.

발 의 자 : 서범수 · 이양수 · 조은희
김기웅 · 권영세 · 이달희
박충권 · 김기현 · 이현승
우재준 · 한지아 · 고동진
박정하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상습 음주운전 근절을 위하여 음주운전자가 5년 이내 음주운전 재범을 하는 경우 일정 기간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된 차량을 운전하는 조건부 면허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다만, 현행 도로교통법에서 음주운전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 대상자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으로 명시하고 있어, 애초 면허가 없어 취소처분을 받을 수 없는 무면허운전자는 대상에서 제외됨.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더 높고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큰 무면허운전자의 음주운전 재범행위를 조건부 면허의 대상에 포함시켜 상습, 고위험 운전자를 엄격하게 관리하고 도로교통의 안전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80조의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의2제1항 중 “(자동차등”을 “(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하며, 자동차등”으로, “위반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을 “위반한”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종전의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위반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